

UR 농산물 협상의 현황과 전망

이재옥 / 농촌경제연구원

I. UR 농산물 협상의 개요

1. 농산물 협상의 대두배경

- 1970년대까지의 식량위기시대에서 1980년대의 식량과잉공급시대로 전환
 - 수출국의 생산능력 증대 및 개도국의 식량자급
 - EC 수출국으로의 전환
 - 개도국의 식량수요 감소
- 과잉생산 → 재고누증 → 수출보조금의 경쟁적인 지급 →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왜곡현상 초래
 - 농산물 수출국가의 재정압박
 -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과잉문제라는 의식 팽배
- 1980년대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한 서비스, 지적 소유권 등의 교역문제와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 UR 협상 시작

II. 농산물 협상의 내용

1. 주요 협상의제

(1) 협상목표 및 이행방법

- 협상목표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

계의 확립

- 실천목표 : 자유무역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GATT 규범의 제정 및 농업보호 및 지지수준의 상당한 감축
- 이행방법 : 보조측정장치(AMS)를 통한 감축과 특정보조정책의 감축
- 단기목표 : 농업보호조치의 현수준 동결(stand-still)

(2) 주요 협상의제

①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 농산물 생산 및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보조금 감축 내지 철폐(가격 및 소득보조, 유통보조, 생산요소보조, 투자 및 이자보조 등)
- 특정품목이나 생산에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는 국내보조는 허용(연구 및 지도사업, 재해보상, 농민연금 등)

② 국경보조(Border Protection)

- 관세 : 농산물 관세인하 및 양허의 확대
- 비관세 : 수입할당, 수입추천, 정부 독점조달수입 등 모든 비관세조치의 관세로의 전환(Tarification)과 전환된 관세의 감축(가입의정서, Waiver, 변동부과금제도 포함)

③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 수출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

④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 관세 국제기준(IOE , IPPC 등)에 합치 운용 함으로써 무역규제의 최소화

⑤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on-Trade Concerns)

○ 식량의 비교역적 관심사항으로 인하여 최소의 농업 및 식량자급률은 보호, 유지되어야 함.

⑥ 개도국 우대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2. 주요국의 기본입장

	수 출 국	수 입 국
선 진 국	<p>[선진수출국]</p> <p>미국 • 농산물교역의 완전 자유화</p> <p>EC • 현행 농업보호 관계 유지 • 보호 및 지지의 상당한 강조</p> <p>케언즈그룹(13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p>[선진수입국]</p> <p>일본, 스위스, 북구, 오스트리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수준의 농업보호 유지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조 <p>한 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수준의 농업보호 유지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의 강조 • 개도국 우대 <p>이집트, 자마이카, 폐루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우대 • 식량원조 및 보상의 확대 <p>[수입개도국]</p>
개 도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루과이 알젤텐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 헝가리 <p>[수출개도국]</p>	

3.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국내보조(Internal Support)

○ 모든 국내보조정책을 감축대상과 허용대상으로 구분

— 가격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모두 일정기간내 점진적으로 감축

— 여타 대상정책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허용

○ 수출국측은 감축대상정책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수입국측은 허용대상정책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의견대립

— 특히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수행에 관련된 보조정책은 허용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

(2) 국경조치(Border Protection)

○ 모든 비관세장벽의 관세화(Tariffication)에 일반적 의견 접근

— EC는 보완장치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여 수용

— 수입국(우리나라, 일본, 스위스)은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유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화에 반대

○ 모든 국가가 유지하고 있는 수입수량규제 등 비관세조치를 철폐하는 대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고율의 관세상당액(Tariff Equivalent)을 부과

— 합의기간내 관세상당액을 점진적으로 감축

○ 관세화와 동시에 저율관세만 부과하는 최초 퀴타(Tariff Quota)를 부여하고 매년 증량

(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 수출보조금의 철폐 또는 감축에 대한 미국, EC 간의 의견대립 심화

— 미국 :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합의기간내 완전철폐

– EC : 국내보조, 국경보호조치와 함께 동등한 규율하에 감축

(4) 비교역적 고려사항 (Non Trade Concerns)

○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등 수입국은 NTC 목적을 위한 농업보호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여타 수출국측은 계속 예외조치 반대

○ 농산물그룹 의장의 NTC에 대한 절충안(우리나라 대표단과의 비공식협의시 제안)

– 수입국중 우리나라, 일본, 스위스 3국만이 NTC에 의한 예외를 고수하고 있음을 강조

– NTC 대상품목의 관세화는 필연적 추세이므로 관세화 과정에서의 반영방안을 강구

4. 우리나라의 기본입장

(1) 우리나라의 협상요건

○ 농수산물 수입국으로서의 위치,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협상국으로서 발언권이 매우 위약

– 국가전체적으로 GATT의 교역자유화를 지지해야 할 입장이나 농산물 분야만은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최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할 상황임.

– UR 농산물 협상은 미국, EC 등 수출강대국 주도로 추진됨으로써 수입국 농업에 대한 예외적 보호조치를 인정않는 방향으로 전개

–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은 '90년대초 선진국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여타 개도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데 한계

○ 농산물 교역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산물의 보호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89.10 GATT / BOP 출입결정과 관련, 잔존 수입제한품목(410개)도 '97년까지 자유화 또는 GATT 규범에 일치시켜야 하는 의무부담

– UR에서 농산물 교역의 대폭적 자유화가 합의될 경우 필수 농산물의 보호근거 상실 우려

(2) 우리나라의 협상목표와 제안내용

① 협상목표

○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이익의 균등한 반영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요소를 GATT 규정에 명확히 반영

○ 최대한의 농산물 수입제한 및 농업보호 근거 확보

○ 개도국의 구조조정 유예기간 및 정책선택의 탄력성 확보

② 제안내용

○ 농업의 특수성 및 농산물 교역자유화의 한계인정

○ 세계 농산물교역 왜곡에 대한 수출국 책임강조

○ 식량안보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 유지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허용

– 최저 자급률 유지 및 최소시장 접근보장

○ 관세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NTC는 제외

○ 현행 수량제한조항인 11조 2(c)조항 운용조건 완화

○ 위생검역규제의 국제기구 기준적용시 각국의 식습관, 환경여건, 기술수준의 차이 고려

○ 합의사항 이행시 개도국에 유예기간과 자율성 부여

III. 농산물그룹 의장초안

1. 의장초안의 내용

(1) 모든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

○ 이미 자유화된 농산물의 관세는 현행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GATT에 제의

○ 현재 남아 있는 수입제한품목은 모두 자유화하여 관세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토록 하나,

—금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기간내에 이를 상당수 준으로 감축

(2)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개혁

○농산물 생산 및 무역에 영향을 주는 국내농업보조정책은 점진적으로 감축해야 하며

○허용되는 정책도 현수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없고 GATT의 감시와 규제의 대상이 됨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급속한 감축

(3) 개도국은 협상결과 이행에 있어서 특별대우 부여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농업개발정책은 허용되나 국제무역에 영향이 없고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아야 하는 엄격한 조건임.

○개도국의 수입제한품목도 모두 자유화하되 유예기간과 이행에 다소의 신축성을 부여함.

(4)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은 최소한도로 고려

○식량안보, 고용안정, 지역개발 유지를 위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도 국내보조에서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국경보호에서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5) 각국이 90년 10월 1일까지 납세자진신고서(Country List)로 작성, GATT에 제출

○Country List 의 내용

—품목별 국내지지수준 및 보조측정기준(AMS)에 의한 산출량

—감축약속대상에서 제외될 정책

—모든 수입제한품목의 관세상당액(T.E) 산출내역

—품목별 최초쿼터 수준

—이미 자유화된 품목의 현행세율(GATT 에 양허대상)

—최근 3년간의 각종 수출보조금 내역

(6) 하반기 협상추진 방향

① 다자간 협상

○감축폭 및 감축기간에 대한 협상

—Country List 및 Offer List 제출직후 협상개시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규제에 대한 협상

—의장초안에 제시한 Framework 를 토대로 협상추진

○약속이행 감시 및 약속사항 점검방안을 별도 협상

○GATT 관련규범 및 규정의 개정

—의장초안 챕터에 따라 개정보완이 불가피한 GATT 규정을 별도협상그룹(조문그룹, Safeguard 그룹 등)에서 검토

② 쌍무협상

○Offer List 내용에 대해 이해 당사국간의 쌍무 협상을 병행추진

2. 의장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미국, 케언즈, 북구 등 대다수의 국가가 의장초안을 협상기초(Basis)로 수용하는 것을 지지

○EC 는 자국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였으나 7.17 EC 각료회의에서 반대입장은 아니지만 종래 EC 주장이 반영되어야 함을 재강조.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수입국은 NTC 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

○인도, 이집트 등 순수입개도국은 개도국 우대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인정되고 있음에 반발

3. 의장초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 의장초안은 기본적으로 수출선진국 입장을 기초로 작성되었고 수입국과 개도국의 관심사항은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음으로 푸타 델 에스테 각료선언에 명시된 협상이익의 균등한 반영원칙과 합치하지 않음을 강조

○ 89.4 중간평가회의시 중요성이 인정된 NTC의 반영이 극히 미흡하며 각국의 농업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획일적인 농업개혁원칙 적용에 반대.

○ 위약적인 우리나라의 농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장초안에 의해 결론이 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므로 합의결과의 국내적 수용이 불가능함. 따라서 원만한 협상진행 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

○ 89.4 중간평가회의시 중요성이 인정된 NTC의 반영이 극히 미흡하며, 각국의 산업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 획일적인 농업개혁원칙 적용에 반대

○ 위약적인 아국농업구조를 감안할 때 의장초안에 의해 결론이 날 경우 국내산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게 됨으로 합의결과의 국내적 수용이 불가피함. 따라서 원만한 협상진행 보다는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

○ 아국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의장초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표명

○ 의장초안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명백히 제시

(1) 국내보조

- 농업발전단계에 따라 정책목표 및 효과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 허용대상요건의 완화, 농업개도국에 대한 허용 확대
- NTC 목적수행을 위한 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

(2) 국경보호

- NTC 품목은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 국내생산 세제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인정(11조 2(c) 유지)
- 관세화시 국내시장 충격 최소화라는 보완장치 마련 및 Rebalancing 인정

(3) 수출경쟁

- 세계 농산물시장 왜곡의 근본원인은 수출보조금 인 바 선진수출국의 책임을 강조
- 수출보조금은 국내보조 및 국경조치에 우선하여 급속히 감축

(4) Country List

- Country List는 의장초안의 내용에 대한 완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출
- Rule이 없는 상태에서의 협상은 불균형되고 비효율적임을 강조

IV. 향후 협상전망과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협상전망

○ 금번(7월) 재개된 제23차 농산물협상에서는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조건하에 의장초안을 TNC 회의에 상정

○ UR 협상 핵심과제인 농산물, 서비스, 지적소유권 분야의 협상이 전체협상의 원만한 타결과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사무국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의견조정작업을 전개할 전망임(제네바 주재 협상상설 기구 설치, 10월 TNC 회의개최 등)

○ UR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의 GATT 체제에 대한 신뢰성의 저하는 물론 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협상막바지에 극적인 양보와 타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이 경우 미국의 EC의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는 수입부과금, 수출보조금의 완전철폐나 급속한 감축주장에서 일보 양보하고 EC는 미국의 국내보조금 감축과 관세화 주장의 일부를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큼.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수입국들이 주장하는 비교역적 고려사항(NTC)이나 개도국우대조치 등을 최소한으로 반영될 예상이며, 반영되더라도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우리나라의 경우 합법적인 농산물 수입제한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농업은 BOP 조항 졸업에 따른 수입개방 예시계획 수립 업무의 발생과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현재의 의장초안이 채택되었을 경우)로 농업의 완전개방과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임

○대부분의 국내 농업지원정책이 점진적 감축대상이 됨

—기존 지원정책의 축소 불가피

[감축 및 규제대상이 되는 정책]

이중가격제, 가격안정대 및 수매비축제, 장·단기 저리 영농자금 지원, 차액보상, 생산조정보상 등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일부 농업구조개선대책

○수입제한품목의 자유화 및 관세전환 불가피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406개)의 자유화와 동시에 관세상당액 부과

—그러나 관세상당액은 계속 감축됨으로서 경쟁력이 위약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에 심각한 타격 예상

—특히 현재 수입이 거의 없는 품목도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문제발생

○국민식량의 안정가격과 농가소득의 보호를 위한 농업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특히 생산이나 특정품목과 연계되지 않는 작물 재배보상, 농어민연금제도, 생계비 보조, 교육의료비 지원 등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질 것임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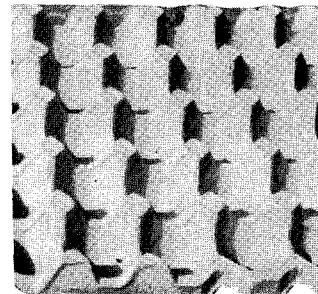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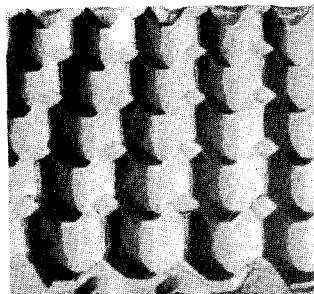
종이난좌

를 사용하시면 달걀의 위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9mm씩 늘어난 왕란·종란용난좌 판매 개시

규격 종이난좌의 특징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예방
4. 파란방지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제일성형공업사

공장 : (0351) 63-7363 · 7097
연락처 : (02) 549-5287